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평성 18년 8월 13일 법률 제131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6월 19일 법률 제54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꽤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특별조치로서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자원생산성혁신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고용안정 등에 배려하면서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여 특정사업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한 조치, 중소기업 활력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및 사업재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사업활동에서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활력의 재생을 꽤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이 최근의 국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활동의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① 이 법률에서 “경영자원”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기능과 기술, 설비 그 밖의 사업 활동에 활용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관계사업자”란 사업자(새롭게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고, 다른 사업자가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외국관계법인”이란 외국법인(새롭게 설립된 자를 포함한다)이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한 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사업재구축”이란 사업자가 행하거나 행하려는 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행하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현재 생산성이 높은 사업 또는 장래에 높은 생산성이 예상되는 사업(이하 “중핵적사업”이라 한다)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구조의 변경(해당 사업자의 관계사업자 및 외국관계법인이 행하는 사업구조의 변경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것

가.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사업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양수나 자본의 상당한 정도의 증가(외국에서 이것들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해당 취득에 의해 해당 다른 회사가 관계사업자

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지분 또는 이것들에 유사한 것의 취득(해당 취득에 의해 해당 외국법인이 외국관계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회사나 외국법인의 설립에 의한 중핵적사업의 개시, 확대 또는 능률의 향상

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시설의 상당한 정도의 철거나 설비의 상당한 정도의 폐기, 회사의 분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또는 사업이나 자산의 양도(외국에서 이것들에 상당한 것을 포함한다), 관계사업자의 주식 양도(해당 양도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관계사업자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관계법인의 주식이나 지분 또는 이것들에 유사한 것의 양도(해당 양도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외국관계법인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회사나 외국법인의 설립이나 청산에 의한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2. 사업자가 그의 경영자원을 활용해서 행하는 사업의 분야 또는 방식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사업혁신”이라 한다)

가. 신상품의 개발 및 생산이나 새로운 역무의 개발 및 제공에 의해 생산이나 판매에 관한 상품의 구성 또는 제공에 관한 역무의 구성을 상당한 정도로 변화시키는 것

나. 상품의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또는 설비의 능률 향상에 의해 상품의 생산을 현저히 효율화하는 것

다. 상품의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 또는 역무의 새로운 제공 방식의 도입에 의해 상품 판매나 역무 제공을 현저히 효율화하거나 국내나 외국에서 새로운 수요를 상당한 정도로 개척하는 것

라. 새로운 원재료, 부품 또는 반제품의 사용이나 원재료, 부품 또는 반제품의 새로운 구입 방식의 도입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절감하는 것

⑤ 이 법률에서 “경영자원재활용”이란 합병, 사업의 양수, 그 밖에 이것들에 준하는 것에 의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해당 사업에 관련된 해당 다른 사업자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서 해당 사업의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을 말한다.

⑥ 이 법률에서 “경영자원융합”이란 그 행하는 사업의 분야를 달리 하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조합시켜 일체적으로 활용해서 현저하게 높은 생산성이 예상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2 이상의 사업자 및 이들의 관계사업자에게 관련되는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사업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양수,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해당 취득에 의해 해당 다른 회사가 관계사업자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의 상당한 정도의 증가 또는 회사의 설립을 동반하는 것일 것

2. 신상품의 개발 및 생산 또는 새로운 역무의 개발 및 제공에 의해 생산이나 판

매에 관련된 상품의 구성이나 제공에 관한 역무의 구성을 상당한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국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상당한 정도로 개척한 것일 것

⑦ 이 법률에서 “자원생산성”이란 에너지의 사용 또는 광물자원의 사용(에너지로서의 사용은 제외한다)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에 공헌하는 정도를 말한다.

⑧ 이 법률에서 “자원생산성혁신”이란 사업자가 행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자원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 활동 또는 상당한 정도의 높은 자원생산성이 예상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구조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것

 가.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사업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양수, 자본의 상당한 정도의 증가,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해당 취득에 의해 해 당 다른 회사가 관계사업자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회사 설립에 의한 자원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 또는 상당한 정도의 높은 자원생산성이 예상되는 사업의 개시, 확대 또는 능률의 향상

 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시설의 상당한 정도의 철거나 설비의 상당한 정도의 폐기, 회사의 분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사업이나 자산의 양도, 관계사업자의 주식양도(해당 양도에 의해 해당 사업자가 관계사업자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회사의 설립이나 청산에 의한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2. 사업자가 그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의 분야나 방식의 변경 또는 사업 활동의 효율화

⑨ 이 법률에서 “사업혁신설비”란 제4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혁신에 필요한 설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설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최초로 도입하는 것일 것

2. 해당 설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스스로 행한 연구개발의 성과인 신기술을 이용한 것일 것

⑩ 이 법률에서 “일반사업혁신설비”란 사업혁신설비로 특정사업혁신설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⑪ 이 법률에서 “특정사업혁신설비”란 사업혁신설비로 국내 및 외국에서 제9항제2호의 신기술에 관한 지적재산(지적재산기본법 (평성14년 법률 제122호) 제2조제1항의 지적재산을 말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혁신설비를 말한다.

⑫ 이 법률에서 “자원생산성혁신설비등”이란 제8항(같은 항 제2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로, 해당 설비 또는 시설이 도입된 사업에 대한 자원생산성

을 주무대신이 정하는 정도 이상으로 향상시키거나 주무대신이 정하는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1. 설비와 일체적인 구조로 되는 시설로서 주무대신이 정하는 시설
2. 상품 또는 그 원재료, 부품이나 반제품의 구입, 생산 또는 판매의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이들의 새로운 유통방식의 도입에 필요한 시설

⑬ 이 법률에서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생산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1. 자원제약대응제품(자원이용의 제약에 의해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특히 기여하는 것이 예상된 기기, 장치 또는 설비로서 주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전용부품등(자원제약대응제품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 이외의 기기, 장치 또는 설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반제품, 부품 또는 원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⑭ 이 법률에서 “특정사업활동”이란 스스로의 경영자원 이외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이 예상되는 사업을 행하는 것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척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 및 해당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⑮ 이 법률에서 “특정신용장”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다음 항에서 단순히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신용장으로, 해당 사업자가 외국관계법인의 외국은행 등(은행법 (소화56년 법률 제59호) 제4조제3항의 외국은행 등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차입(어음 할인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용장에 근거한 채무를 이행하는 뜻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⑯ 이 법률에서 “특정신용장발행계약”이란 사업자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특정신용장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해당 특정신용장에 근거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⑰ 이 법률에서 “창업”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이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것(다음 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2.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새롭게 설립된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⑱ 이 법률에서 “창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항 제1호의 창업을 행하려는 개인으로, 1개월 이내에 해당 창업을 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2. 전항 제1호의 창업을 행한 개인으로, 사업을 개시한날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3. 전항 제2호의 창업을 행하려는 개인으로, 2개월 이내에 해당 창업을 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4. 전항 제2호의 창업을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설립일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⑲ 이 법률에서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3억엔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경영하는 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한 업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경영하는 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자
4. 자본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소매업(다음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자
5. 자본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그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자
6. 기업조합
7. 협동조합
8.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⑳ 이 법률에서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이란 중소기업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거나 새로운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 것에 의해 신상품, 신기술 또는 새로운 역무의 개발, 기업화, 수요의 개척 그 밖의 새로운 사업의 개척(이하 “신사업의 개척”이라 한다)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㉑ 이 법률에서 “특정중소기업자”란 과대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재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㉒ 이 법률에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이란 특정중소기업자가 회사의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가 승계한 사업에 대하여 수지의 개선 그 밖의 강화를 도모한 것에 의해 해당 사업의 재생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㉓ 이 법률에서 “승계사업자”란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의해 사업을 승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㉔ 이 법률에서 “사업재생”이란 과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의 전부 또는 일부 채권자의 협력을 얻으면서 그 사업의 재생을 꾀하는 것(재생 절차, 갱생 절차,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업의 재생을 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㉕ 이 법률에서 “특정인증분쟁해결사업자”란 인증분쟁해결사업자(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16년 법률 제151호)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제48조에서 같다)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㉖ 이 법률에서 “특정인증분쟁해결절차”란 인증분쟁해결절차(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로, 특정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사업재생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㉗ 이 법률에서 “특정통상실시권승락계약”이란 법인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가 다른 법인에게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상실시권(제6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이하 단순히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을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19제9항 및 제30조의20제2항제2호에서 같다)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된 계약으로, 해당 서면에서 허락의 대상이 되는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번호(특허법 (소화 34년 법률 제121호) 제66조제3항제6호의 특허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실용신안법 (소화 34년 법률 제123호)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평성 5년 법률 제26호) 부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정 전의 실용신안법 제14조제3항의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재되어 있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㉘ 이 법률에서 “특정통상실시권등록부”란 특정통상실시권승락계약에 의해 허락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기본지침)

제3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우리나라의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사업재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재구축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내용의 건전성 향상에 관한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재구축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재구축에 관한 중요 사항
3. 경영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영자원재활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나. 경영자원재활용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영자원재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경영자원융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영자원융합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내용의 건전성 향상에 관한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나. 경영자원융합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영자원융합에 관한 중요 사항
5. 자원생산성혁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원생산성혁신에 의한 자원생산성의 향상 또는 이것에 의해 달성해야 할 자원생산성의 수준에 관한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나. 자원생산성혁신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자원생산성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6. 사업혁신설비의 도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입해야 할 일반사업혁신설비 및 특정사업혁신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일반사업혁신설비 및 특정사업혁신설비의 도입에 관한 중요 사항
7.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원제약대응제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나. 도입해야 할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자원제약대응제품 및 전용부품등에 의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에 관한 중요 사항
8. 특정사업활동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정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 관한 사항
 나. 특정사업활동의 추진에서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가 달성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특정사업활동의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9.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의한 사업 강화에 관한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나.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의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관한 중요 사항

10. 그 밖에 우리나라의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경제산업대신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의해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기본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기본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사업분야별 지침)

제4조 ① 주무대신은 기본지침(전조 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근거하여 소관 사업 분야 중 과잉공급 구조(공급능력이 수요에 비추어 현저히 과잉이고, 그 상태가 장기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사업 분야로서 해당 사업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활력의 재생을 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생산성 향상이 특히 필요한 사업 분야로 해당 사업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활력의 재생 또는 산업활동의 혁신을 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 분야에 관한 산업활력의 재생 또는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사업분야별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분야별지침에는 해당 사업 분야의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또는 자원생산성혁신의 실시 방법, 그 밖의 해당 사업 분야에 관한 산업활력의 재생 또는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의해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분야별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주무대신은 사업분야별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경제산업대신,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무대신은 사업분야별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자원생산성혁신등의 원활화

제1절 사업활동의 계획

(사업재구축계획의 인정)

제5조 ① 사업자는 실시하려는 사업재구축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재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2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재구축을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2 이상의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업재구축계획을 작성하여 전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재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재구축의 목표
2. 사업재구축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내용의 건전성 향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3. 사업재구축의 내용 및 실시 시기
4. 사업재구축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5. 사업재구축에 수반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④ 사업재구축계획에는 사업재구축의 실시를 위하여 사업혁신설비를 도입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⑤ 사업재구축계획에는 관계사업자 및 외국관계법인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재구축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재구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재구축계획이 기본지침(해당 사업재구축계획에 관한 중핵적사업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지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지침 및 해당 사업분야별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2. 해당 사업재구축계획에 관한 사업재구축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된다고 예상되는 것일 것
3. 해당 사업재구축계획에 관한 사업재구축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경영자원이 유효하게 활용되는 것일 것
4. 해당 사업재구축계획에 관한 사업재구축이 내외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해당 사업재구축에 관한 중핵적사업이 속하는 사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5. 해당 사업재구축계획에 관한 사업재구축이 과잉공급 구조의 해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6. 해당 사업재구축계획에 관한 사업재구축이 국민경제의 국제경제 환경과 조화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것
7. 해당 사업재구축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하는 것이 아닐 것
8.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2 이상의 사업자의 신청에 관한 사업재구축계획 또는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관한 사업재구축계획은 다음 가목 및 나목에 적합할 것

가. 내외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해당 신청을 행하는 사업자와 해당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경쟁이 확보되는 것일 것

나.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닐 것

⑦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인정에 관한 사업재구축계획의 내용을 공표한다.

(사업재구축계획의 변경 등)

제6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해당 인정에 관한 사업재구축계획에 따라서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인정사업재구축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한 사업재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인정사업재구축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나 외국관계법인이 해당 인정에 관한 사업재구축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인정이 있은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사업재구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서 사업재구축을 위한 조치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사업재구축계획이 전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정사업재구축사업자에게 해당 인정사업재구축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전2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한다.

⑤ 전조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의 인정)

제7조 ① 사업자는 실시하려는 경영자원재활용(해당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실시하려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용하려는 다른 사업자의 경영자원의 내용
2. 경영자원재활용의 목표
3. 경영자원재활용에 의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생산성 향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4. 경영자원재활용의 내용 및 실시 시기
5. 경영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경영자원재활용에 수반한 노무에 관한 사항

③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영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의 상당한 정도의 증가{이것과 동시에 자본금,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하 "자본금등"이라 한다)의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본금등의 감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경영자원재활용에 수반하여 행하려는 사업혁신설비의 도입, 그 밖의 사업혁신

에 관한 사항

3. 경영자원재활용에 수반하여 행하려는 시설의 상당한 정도의 철거 또는 설비의 상당한 정도의 폐기에 관한 사항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이 기본지침(해당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업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지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지침 및 해당 사업분야별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2. 해당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일 것
3. 해당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이 과잉공급 구조의 해소를 방해한 것이 아닐 것
4. 해당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이 국민경제의 국제경제 환경과 조화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것이 아닐 것
5. 해당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것
6.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은 다음 가목 및 나목에 적합할 것

가. 내외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해당 신청을 하는 사업자와 해당 신청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의 적정한 경쟁이 확보되는 것일 것

나.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닐 것

⑤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의 내용을 공표한다.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의 변경 등)

제8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인정경영자원재활용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인정경영자원재활용사업자가 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인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경영자원재활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경영자원재활용계획이 전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경영자원재활용사업자에게 해당 인정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전2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한다.
⑤ 전조 제4항 및 제5항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경영자원융합계획의 인정)
제9조 ① 행하는 사업 분야를 달리 하는 2 이상의 사업자는 그 실시하려는 경영자원융합에 관한 계획(이하 "경영자원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경영자원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자원융합의 목표
2. 경영자원융합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내용의 건전성 향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3. 경영자원융합의 내용 및 실시 시기
4. 경영자원융합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5. 경영자원융합에 수반한 노무에 관한 사항
③ 경영자원융합계획에는 경영자원융합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혁신설비를 도입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④ 경영자원융합계획에는 관계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경영자원융합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경영자원융합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영자원융합계획이 기본지침(해당 경영자원융합계획에 관련된 사업분야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지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지침 및 해당 사업분야별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2. 해당 경영자원융합계획에 관련된 경영자원융합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일 것
3. 해당 경영자원융합계획에 관련된 경영자원융합이 과잉공급 구조의 해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4. 해당 경영자원융합계획에 관련된 경영자원융합이 국민경제의 국제경제 환경과 조화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것
5. 해당 경영자원융합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것
6. 다음 가목 및 나목에 적합할 것
가. 내외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 제1항의 인정신청을 한 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조합시켜 일체적으로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과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의 적정한 경쟁이 확보

되는 것일 것

나.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닐 것

⑥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융합계획의 내용을 공표한다.

(경영자원융합계획의 변경 등)

제10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융합계획에 따라서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인정경영자원융합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인정경영자원융합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가 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융합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인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경영자원융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경영자원융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경영자원융합계획이 전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경영자원융합사업자에게 해당 인정경영자원융합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전2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한다.

⑤ 전조 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의 인정)

제11조 ① 사업자는 실시하려는 자원생산성혁신에 관한 계획(이하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2 이상의 사업자가 그 자원생산성혁신을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2 이상의 사업자는 공동으로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을 작성하여 전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원생산성혁신의 목표
2. 자원생산성혁신에 의한 자원생산성의 향상 정도 또는 이것에 의해 달성해야 할 자원생산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3. 자원생산성혁신의 내용 및 실시 시기
4. 자원생산성혁신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5. 자원생산성혁신에 수반한 노무에 관한 사항

④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는 자원생산성혁신의 실시를 위해 자원생산성혁신설비등을 도입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⑤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는 관계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자원생산성혁신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이 기본지침(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지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지침 및 해당 사업분야별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2.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일 것
3.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이 과잉공급 구조의 해소를 방해한 것이 아닐 것
4.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이 국민경제의 국제경제 환경과 조화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것
5.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하는 것이 아일 것
6.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2 이상의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 또는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 계획은 다음 가목 및 나목에 적합할 것
 가. 내외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해당 신청을 한 사업자와 해당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의 적정한 경쟁이 확보되는 것일 것
 나.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닐 것
7.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화물이용운송사업법 (평성 원년 법률 제82호) 제2조제7항의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외국인 국제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같은 법 제35조제1항의 등록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활동을 실시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8.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조제8항의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외국인 국제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허가를 받고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활동을 실시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활동에 관련된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의 내용이 같은 법 제23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일반트럭운송사업{ 트럭운송사업법』(평성 원년 법률 제83호) 제2조제2항의 일반트럭운송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활동을 실시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활동에 관련된 일반트럭운송사업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⑦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외국인 국제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의 인정에 있어서 국제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국제화물운송에 관련된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조제8항의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야에서 공정한 사업활동이 행하여지고, 그 건전한 발달이 확보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⑧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정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의 내용을 공표한다.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의 변경 등)

제12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해당 인정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따라서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가 해당 인정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인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원생산성혁신을 위한 조치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이 전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에게 해당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전2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한다.

⑤ 전조 제6항에서 제８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제13조 ① 주무대신은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사업재구축계획 또는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사업재구축계획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인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 같다)을 하려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인정(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 같다)을 하려는 경우, 경영자원융합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인정(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 같다)을 하려는 경우 또는 동일한 업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 또는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인정(전조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 같다)을 하려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신청서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송부에 관련된 사업재구축계획에 따라 행하려는 사업재구축을 위한 조치,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따라 행하려는 경영자원재활용을 위한 조치, 경영자원융합계획에 따라 행하려는 경영자원융합을 위한 조치 또는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따라 행하려는 자원생산성혁신을 위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업재구축등관련조치"라고 한다)가 해당 송부에 관련된 사업재구축에 관계된 업종, 경영자원재활용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업이 속하는 사업분야, 경영자원융합에 관련된 사업이 속하는 사업분야 또는 자원생산성혁신에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사업재구축업종등"이라 한다)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해당 사업재구축업종등에 있어서의 내외 시장의 상황, 사업재구축등관련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정도, 그 밖의 해당 의견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대신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송부에 관련된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경영자원융합계획 또는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송부에 관련된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경영자원융합계획 또는 자원생산성혁신계획으로 주무대신이 제5조제1항의 인정, 제7조제1항의 인정, 제9조제1항의 인정 또는 제11조제1항의 인정을 한 것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인정 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사업자 간의 적정한 경쟁관계를 저해하고,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 하도록 상호간에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제2절 설비도입의 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의 인정)

제14조 ① 사업자는 실시하려는 사업혁신설비의 도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혁신설비도입의 목표
2. 도입하려는 사업혁신설비의 내용 및 도입 시기
3. 사업혁신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4. 도입하려는 사업혁신설비가 특정사업혁신설비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사업혁신설비에 관련된 제2조제9항제2호의 신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의 보호 상황

③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 기본지침(해당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사업혁신설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지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지침 및 해당 사업분야별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2. 해당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사업혁신설비의 도입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일 것
3. 해당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사업혁신설비의 도입이 과잉공급 구조의 해소를 방해한 것이 아닐 것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의 변경 등)

제15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사업자가 해당 인정에 관련된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인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혁신설비의 도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 전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사업자에게 해당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조 제3항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의 인정)

제16조 ① 사업자는 실시하려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에 관한 계획(이하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전용부품등을 생산하는 자(해당 전용부품등의 전부를 스스로 생산하는 자원제약대응제품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전항의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따라서 도입하려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전용부품등을 사용해서 자원제약대응제품을 생산하려는 자 모두와 공동으로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 목표
2. 도입하려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의 종류
3. 도입하려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내용 및 도입 시기
4.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5. 도입하려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것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사항

가. 자원제약대응제품: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계획

나. 전용부품등: 해당 전용부품등의 종류 및 생산·판매 계획과 해당 전용부품등이 사용된 자원제약대응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계획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이 기본지침(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 또는 전용부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지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지침 및 해당 사업분야별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2.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일 것
3.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것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정하는 생산 및 판매가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따라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일 것

가. 자원제약대응제품: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의 생산 및 판매

나. 전용부품등: 해당 전용부품등의 생산 및 판매와 해당 전용부품등이 사용된 자원제약대응제품의 생산 및 판매

4. 해당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이 과잉공급 구조의 해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의 변경 등)

제17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사업자가 해당 인정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인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이 전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사업자에게 해당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조제4항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제3절 특례 조치 등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조사에 관한 특례)

제18조 ① 사업자가 인정사업재구축계획, 인정경영자원재활용계획, 인정경영자원융합계획 또는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이하 "인정계획"이라고 총칭한다)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거나 양도하는 것에 의해 새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해당 새롭게 설립된 주식회사의 발기인에게 관련된 회사법 (평성17 법률 제86호) 제33조제10항제1호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호 중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경우"로 한다.

② 전항에서 상업등기법 (소화 38년 법률 제125호) 제47조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항 중 "다음 서면"은 "다음 서면(제4호에 열거하는 서면은 제외한다)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재산의 출자 또는 양도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주식의 발행등에 관련된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한 특례)

제19조 ① 사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출자한 경우(신주예약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다른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회사법 제207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8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상업등기법 제56조 및 제57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다음 서면"은 "다음 서면(제3호가목 및 제4호에 열거하는 서면은 제외한다)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재산의 출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의 2 ① 전조 제1항은 기술연구조합법 (소화 36년 법률 제81호) 제61조제2

항에서 규정하는 조직변경을 한 기술연구조합이 같은 법 제67조제1호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시발행주식을 발행하는 때에 사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 중 " 회사법 제207조제1 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8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 기술연구조합법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207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전조 제1항은 기술연구조합법 제118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설분할을 하는 기술연구조합이 같은 법 제12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신설분할시발행주식을 발행할 때에 사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 중 " 회사법 제207조제1항부터 제 8 항까지 및 제28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 기술연구조합법 제130조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207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전2항에서 기술연구조합법 제169조제1항 및 제170조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69조제1항제9호 및 제170조제1항제10호 중 "발행한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은 "발행한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다(1) 및 라의 서면은 제외한다)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재산의 출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특별 지배회사에 대한 사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① 인정사업재구축사업자, 인정경영자원재활용사업자, 인정경영자원융합사업자 또는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이하 "인정사업자"라고 총칭한다)의 특정 관계사업자(관계사업자로 해당 인정사업자 또는 해당 인정사업자가 발행이 끝난 주식의 전부를 가지는 주식회사가 그 총 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식회사로 인정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주식회사에 한한다)를 하는 것에 관련된 회사법 제468조제1항, 제784조제1항 및 제796조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68조제1항 중 "특별지배회사(어떤 주식회사의 총 주주 의결권의 10분의 9(이를 초과하는 비율을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을 다른 회사 및 해당 다른 회사가 발행이 끝난 주식의 전부를 가지는 주식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해당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 특별지배회사(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인정계획에 있어 어떤 주식회사가 특정 관계사업자(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특정관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의 해당 특정관계사업자에게 관련된 같은 항에 규정하는 인정사업자나 해당 인정사업자의 다른 특정관계사업자 또는 해당 인정계획에 관련된 다른 인정사업자나 해당 다른 인정사업자의 특정관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법 제784조제1항 및 제796조제1항 중 "특별지배회사"는 "특정특별지배회사"로

한다.
1. 사업의 양도
2. 사업 전부의 양수
3. 흡수합병
4. 흡수분할
5. 흡수분할에 의한 다른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고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
6. 주식교환
7. 주식교환에 의한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이 끝난 주식 전부의 취득

② 인정사업자의 특정관계사업자로 주식회사인 자가 인정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특정관계사업자에 관해서는 회사법 제80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설합병(해당 인정사업자나 해당 인정사업자의 다른 특정관계사업자 또는 해당 인정계획에 관련된 다른 인정사업자나 해당 다른 인정사업자의 특정관계사업자로 주식회사인 자로 하는 것에 한한다)
2. 신설분할(신설분할에 의해 설립하는 회사가 지분회사인 경우 및 회사법 제805조에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로 특정관계사업자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정관계사업자의 주주는 해당 특정관계사업자에게 해당 행위를 그만두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2항에서 회사법 제806조제3항 및 제808조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806조제3항 중 "결의의 날"은 "결의의 날(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설 합병계약의 일 또는 신설분할계획 작성의 날"로 하고, 같은 법 제808조제3항 중 "작성의 날"은 "작성의 날,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설합병계약의 날 또는 신설분할계획 작성의 날"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상업등기법 제80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및 제8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 중 "다음 서면"은 "다음 서면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단지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흡수합병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고, 같은 법 제81조 중 "다음의 서면"은 "다음의 서면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단지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신설병합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서면"은 "서면(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이사 과반수의 일치가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하고, 같은 법 제85조 중 "다음의 서면"은 "다음의 서면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 인정(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흡수분할 또는 흡수분할에 의해 다른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며, 같은 법 제86조 중 "다음의 서면"은 "다음의 서면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신설분할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해당 경우"는 "해당 경우"로, "의사록"은 "의사록,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이사 과반수의 일치가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하며, 같은 법 제89조 중 "다음의 서면"은 "다음의 서면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교환에 의한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이 끝난 주식 전부의 취득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주식병합에 관한 특례)

제21조 ① 인정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인 주식회사가 자본금등의 감소와 동시에 행하는 주식병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것에 관련된 회사법 제180조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항 중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이사회)"로 한다.

1. 해당 주식병합과 동시에 단원주식 수를 감소하거나 그 수를 폐지한 것일 것
2. 해당 주식병합 후 각 주주가 각각 가지는 단원의 수(해당 주식병합과 동시에 단원주식 수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각 주주가 각각 가지는 주식의 수)가 해당 주식병합 전에 각 주주가 각각 가지는 단원의 수를 하회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전항의 경우 상업등기법 제61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조 중 "열거한 서면"은 "열거한 서면 및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의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사업양도의 경우 채권자의 이의최고 등)

제22조 ① 사업자로 주식회사인 자(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 "회사"라고 한다)는 인정

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집행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 또는 결정의 날부터 2주간 이내에 특정채권자(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자 중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고, 해당 채권을 해당 회사에 대하고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요령 및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은 1개월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최고를 받은 특정채권자가 같은 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정채권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특정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할 목적으로 신탁회사나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하더라도 해당 특정채권자를 해할 한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의 특례)

제22조의2 ① 자원생산성혁신을 실시하려는 사업자가 그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가 해당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따라 실시하려는 사업활동에 관련된 사업 중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에 관한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의 등록 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변경등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해서는 이들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은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가 그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의3 ① 자원생산성혁신을 실시하려는 사업자가 그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가 해당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따라 실시하려는 사업활동에 관련된 사업 중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에 관한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0조나 제45조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31조, 제46조제4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은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가 그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여 제12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트럭운송사업법 의 특례)

제22조의4 ① 자원생산성혁신을 실시하려는 사업자가 그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가 해당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따라 실시하려는 사업활동에 관련된 사업 중 일반트럭운송사업에 관한 트럭운송사업법 제3조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이나 제30조제1항·제2항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제3항이나 제32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은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가 그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대여 제12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의 특례)

제23조 ①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평성 10년 법률 제90호) 제2조제2항의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하 단순히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사업재구축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조합계약에서 같은 항 각 호에 열거한 사업 외에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신주예약권 또는 지정유가증권(같은 항 제3호의 지정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나 외국법인의 지분 또는 이들에 유사한 것으로 외국관계법인(인정사업재구축계획에서 외국관계법인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외국관계법인에 한한다)에 관련되는 것의 취득 및 보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44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항 중 “제3조제1항에 열거한 사업 이외의 행위”는 “제3조제1항에 열거한 사업 또는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의 사업 이외의 행위”로, “같은 항에 열거한 사업 이외의 행위”는 “제3조제1항에 열거한 사업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 이외의 행위”로 한다.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행하는 사업재구축 원활화 등 업무)

제24조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및 자원생산성혁신을 원활화하고,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평성 13년 법률 제75호) 제66조제1호의 단기사채는 제외한다. 제30조의23제1항제6호에서 같다} 및 해당

자금의 차입에 관련된 채무보증의 업무를 행한다.

1. 인정사업재구축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 인정경영자원재활용사업자 또는 인정경영자원융합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 인정사업재구축계획, 인정경영자원재활용계획 또는 인정경영자원융합계획에 따라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또는 경영자원융합을 위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2. 인정자원생산성혁신사업자나 그 관계사업자 또는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사업자: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 또는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따라 자원생산성혁신설비등 또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을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의 특례)

제24조의2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평성 19년 법률 제57호)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업자 또는 그 관계사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또는 자원생산성혁신을 위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정금융기관(같은 조 제2항의 지정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출자(내외 금융질서의 혼란을 위하여 해당 자금에 대하여 출자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된 기간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에 대해 해당 인정사업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사업 계속이 곤란해지거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손실이 생긴 경우, 해당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손실액의 일부 보전을 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정금융기관에 의한 출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2조제5호의 위기대응 업무로 보고, 같은 항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열거한 업무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바꾸어 읽기는 정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의 특례)

제25조 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소화 38년 법률 제101호)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인정사업자나 그 관계사업자인 중소기업자 또는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사업자나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사업자인 중소기업자 중 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가 인정계획 또는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나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따라 사업혁신설비, 자원생산성혁신설비등 또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을 꾀하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같은 항 제2호의 신주예약권부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및 제39조의6에서 같다)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 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26조 <삭 제>

제27조 <삭 제>

(정보의 제공)

제28조 ① 국가는 사업자의 사업혁신의 원활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이 우리나라 내외에 있어서 다른 상황 및 그 요인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국가는 전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내외의 산업, 우리나라 사업자의 해외 사업활동 등의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래관행의 개선의 촉진)

제29조 국가는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및 자원생산성혁신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상품의 판매 등에 관련된 거래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정을 공통으로 하는 사업자로부터의 상당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거래관행에 관한 조사를 하여 해당 사업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 그 밖의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의 지원)

제30조 ① 국가는 우리나라의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있어서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서비스업의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및 자원생산성혁신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업에 관한 경영 방법 또는 기술에 관한 조언, 연수 또는 정보제공,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본지침(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분야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지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지침 및 해당 사업분야별지침)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자나 대학 등과 서로 연계를 꾀하면서 협력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의 2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에 의한 특정사업활동의 지원 등

제1절 총칙

(기구의 목적)

제30조의2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는 최근 국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우리나라 산업이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경영자원 이외의 경영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통한 산업활동의 혁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특정사업활동에 대하여 자금공급, 그 밖의 지원 등을 하는 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특정사업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수)

제30조의3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이하 이 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기구”라고 한다)는 하나만 설립한다.

(주식의 정부 보유)

제30조의4 정부는 상시 기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식, 사채 및 차용금의 인가 등)

제30조의5 ① 기구는 회사법 제199조제1항의 모집주식(제84조제1호에서 “모집주식”이라 한다), 같은 법 제238조제1항의 모집신주예약권(같은 호에서 “모집신주예약권”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6조의 모집사채(제30조의33 및 제84조제1호에서 “모집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한 자를 모집하여 주식교환에 즈음하여 주식,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려는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구는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부의 출자)

제30조의6 정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상호)

제30조의7 ① 기구는 그 상호 중에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산업혁신기구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설립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제30조의8 기구의 정관에는 회사법 제2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1. 기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다음 호, 제3호 및 다음 조에서 “설립시발행주식”이라 한다)의 수(기구를 종류주식 발행 회사로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2. 설립 시 발행주식의 납입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 1주와의 상환으로 납입하는 금전 또는 급부하는 금전 이외의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3. 정부가 할당받는 설립 시 발행주식의 수(기구를 종류주식 발행 회사로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4. 회사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
5. 이사회 및 감사를 두는 취지
6. 제30조의23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완료에 의해 해산하는 취지

② 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해서는 아니된다.

1. 회사법 제2조제12호의 위원회를 두는 취지
2. 회사법 제139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규정

(설립의 인가 등)

제30조의9 기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할당받는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신속하게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 ① 경제산업대신은 전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 절차 및 정관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정관에 허위기재나 기록 또는 허위의 서명이나 기명날인(회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하는 조치를 포함한다)이 없을 것
3. 업무 운영이 건전하게 행하여지고, 우리나라에서 특정사업활동의 추진에 기여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인정될 것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설립 시 이사 및 설립 시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제30조의11 회사법 제38조제1항의 설립 시 이사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설립 시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은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제30조의12 회사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963조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중 “전항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은 주식회사의 성립 전”은 “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10제2항의 인가 후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의 성립 전은 정관”으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 중 “설립 시 발행주식의 인수”는 “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10제2항의 인가의”로, 같은 법 제59조제1항 제1호 중 “정관 인증의 연월일 및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성명”은 “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10제2항의 인가의 연월일”로, 같은 법 제963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은 “제34조제1항(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12에 따라 바꾸어 읽어서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회사법 규정의 적용 제외)

제30조의13 회사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는 기구의 설립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관리

제1관 이사 등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의 인가)

제30조의14 기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결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사 등의 비밀유지 의무)

제30조의15 기구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직원이나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 수 있었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관 산업혁신위원회

(설치)

제30조의16 기구에 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권한)

제30조의1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행한다.

1. 제30조의25제1항의 특정사업활동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해당 특정사업활동지원 내용의 결정
2. 제30의27제1항의 주식등 또는 채권의 양도, 그 밖의 다른 처분의 결정
3. 전2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회사법 제36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을 받은 사항의 결정

② 위원회는 전항 제1호 및 제2호 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직)

제30조의18 ① 위원회는 이사인 위원 3명 이상 7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 중에는 대표이사 및 사외 이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④ 위원의 선정 및 해직 결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⑤ 위원은 각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리한다.

⑧ 위원회는 미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운영)

제30조의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전조 제8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출석하고, 현재 재임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전항에 따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전항에 따라 의결에 참가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2항에 규정하는 현재 재임하는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자는 제3항에 따른 의결 후 지체 없이 해당 의결의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출석한 위원 및 감사는 이것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⑨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에 관해서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대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⑩ 전 각항 및 다음 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의사의 절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의사록)
제30조의20 ① 기구는 위원회의 날부터 10년간 전조 제8항의 의사록을 그 본점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② 주주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전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③ 채권자는 위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의사록에 관하여 전항 각 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청구 또는 전항의 청구에 관계된 열람 또는 등사를 하는 것에 의해 기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⑤ 회사법 제868조제1항, 제869조, 제870조(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871조 본문, 제872조(제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873조 본문, 제875조 및 제876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이사는 제1항의 의사록에 관하여 제2항 각 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등기)
제30조의21 ① 기구는 위원을 선정한 때에는 2주간 이내에 그 본점 소재지에서 위원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한다. 위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에 따른 위원 선정의 등기신청서에는 위원의 선정 및 그 선정된 위원이 취임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퇴임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

④ 기구는 위원에 선정된 이사 중 사외이사인 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인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 관 정관의 변경

제30조의22 기구의 정관변경 결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절 업무

제1관 업무의 범위

제30조의23 ①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상사업자(제30조의25제1항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된 사업자(민법 (명치 29년 법률 제89호) 제667조제1항의 조합계약에 의해 성립한 조합, 상법 (명치 32년 법률 제48호) 제535조의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성립한 익명조합,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평성 17년 법률 제40호) 제2조의 유한책임사업조합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이들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장 및 제77조에서 같다)에 대한 출자
2. 대상사업자에 대한 기금(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평성 18년 법률 제48호) 제131조의 기금을 말한다)의 모집
3. 대상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대상사업자가 발행한 유가증권(금융상품거래법 (소화 23년 법률 제25호) 제2조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호 및 제12호에서 같다) 및 대상사업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취득
5. 대상사업자에 대한 금전채권 및 대상사업자가 보유하는 금전채권의 취득
6. 대상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및 자금차입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
7. 대상사업자를 위하여 하는 유가증권(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보는 같은 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권리에 한한다)의 모집 또는 사모(私募)
8. 특정사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전문가의 파견
9. 특정사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조언
10. 특정사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지적재산기본법 제2조제2항의 지적재산권 및 외국에서 이것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의 이전, 설정이나 승낙 또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평성 5년

법률 제47호) 제2조제6항의 영업비밀 및 외국에서 이것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음 호에서 같다)의 명시

11. 전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하거나 이전, 설정 또는 승낙을 받거나 영업비밀의 공개를 받는 것
12. 보유한 주식, 신주예약권, 지분 또는 유가증권(제30조의27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 그 밖의 처분
13. 채권의 관리 및 양도, 그 밖의 처분
14. 전 각 호의 업무에 관련되어 필요한 교섭 및 조사
15. 특정사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정보의 제공
16. 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7. 전 각 호의 것 외에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구는 전항 제17호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미리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관 지원 기준

제30조의24 ① 경제산업대신은 기본지침(제3조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련 부분에 한한다)에 근거하여 기구가 특정사업활동의 지원(전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의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절 및 제77조에서 “특정사업활동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해당 특정사업활동지원의 내용을 결정할 때에 따라야 할 기준(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특정사업활동지원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관련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다음 조에서 “사업소관장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정한 때에는 공표한다.

제3관 업무의 실시

(지원 결정)

제30조의25 ① 기구는 특정사업활동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지원기준에 따라 그 대상이되는 사업자 및 해당 특정사업활동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구는 특정사업활동지원을 할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업소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관장관은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속하는 사업분야의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기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원 결정의 철회)

제30조의26 ① 기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원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자가 특정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2. 대상사업자가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경정절차개시의 결정, 특별청산개시의 명령 또는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결정을 받은 때

② 기구는 전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철회한 때에는 즉시 대상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 등의 양도, 그 밖의 처분 등)

제30조의27 ① 기구는 그 보유하는 대상사업자에게 관련된 주식등 또는 채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의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기구는 경제정세, 대상사업자의 사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평성 37년 3월 31일까지 보유해야 할 모든 주식등 및 채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구가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대부금의 상환기한은 평성 37년 3월 31일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5절 국가의 원조 등

제30조의28 ① 경제산업대신 및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기구 및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그 밖의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정한 것 외에 경제산업대신 및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기구 및 대상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가 촉진되도록 서로 연계를 꾀하면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재무 및 회계

(예산의 인가)

제30조의29 기구는 매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그 사업연도의 예산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예산에는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배당 등의 결의)

제30조의30 기구의 잉여금 배당, 그 밖의 잉여금 처분의 결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무제표)

제30조의31 기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 보증)

제30조의31의2 정부는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소화 21년 법률 제24호)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구의 제30조의5제1항의 사채 또는 차입에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절 감독

(감독)

제30조의32 ① 기구는 경제산업대신이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재무대신과의 협의)

제30조의33 경제산업대신은 제30조의5제1항(모집사채를 인수한 자를 모집하고, 주식교환 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려는 때에 한한다) 제30조의10제2항, 제30조의22, 제30조의23제2항, 제30조의29제1항, 제30조의30 또는 제30조의36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제30조의34 ① 경제산업대신은 기구의 사업연도마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평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구에 대하여 해당 평가결과를 통지하고,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절 해산 등

(기구의 해산)

제30조의35 기구는 제30조의23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완료에 의해 해산한다.

(합병 등의 결의)

제30조의36 기구의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 및 해산의 결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장 중소기업 활력의 재생

제1절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의 원활화

(경영자원활용 신사업 계획의 인정)

제31조 ① 중소기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려는 경영자원활용 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의 목표
2.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의 내용
3.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의 실시 시기
4.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③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관련된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이 해당 중소기업자의 능력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발휘시키는 것이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것
2. 그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이 해당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일 것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2조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인정을 한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인정에 관련된 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인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이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조 제3항은 제1항의 인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제33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소화 25년 법률 제264호) 제3조의2제1항의 무담보보험

(이하 “무담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로, 창업관련보증(같은 항의 채무보증으로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 중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창업자인 중소기업자(제2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의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것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의 창업자를 포함한다)”로,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엔”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창업관련보증(이하 “창업관련 보증”이라 한다)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 및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1천만엔 및 8천만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차용금액 중 보증을 한 금액이 8천만엔(해당 채무자”는 “창업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마다 해당 차용금액 중 보증을 한 금액이 1천만엔 및8천만엔(창업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마다 해당 채무자”로, “8천만엔부터”는 “각각 1천만엔 및8천만엔부터”로 한다.

② 제2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의 창업자로 창업관련보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창업자를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무담보보험의 보험관계로 창업관련보증에 관련된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중소기업자에 관련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중 “1백분의 80” 및 같은 법 제5조 중 “1백분의 70(무담보보험, 특별소액보험, 유동자산 담보보험, 공해방지보험, 에너지대책보험, 해외투자관계보험, 신사업개척보험, 사업재생보험 및 특정사채보험에서는 1백분의 80”은 “1백분의 90”으로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2조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열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 스스로 영위하던 사업을 그 경영상황의 악화에 의해 폐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경영상황의 악화에 의해 해산한 회사의 해당 해산일에 해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었을 것
   나. 제2조제18항제4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를 설립한 개인이 과거에 스스로가 영위하던 사업을 그 경영상황의 악화에 의해 폐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회사를 설립한 개인이 과거에 경영상황의 악화에 의해 해산한 회사의 해당 해산일에 해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었을 것
2. 해당 보험관계에 관련된 채무보증위탁의 청약을 전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의 폐지일 또는 해산일부터 5년을 경과한 일 전에 행하였을 것

④ 창업관련보증을 받은 자 1명에 대한 무담보보험의 보험관계로 정령으로 지정한 것의 보험가액 합계액의 한도액은 정령으로 정한다.

⑤ 무담보보험의 보험관계로 창업관련보증에 관련된 것에 대한 보험료의 금액은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액에 년 1백분의2 이내에서 정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34조 ① 중소기업자의 특정신용장발행계약에 근거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를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제1항의 차입에 의한 채무로 보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보통보험(이하 “보통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로 특정신용장관련보증(특정신용장발행계약에 근거한 채무보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련된 것에 관한 같은 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항 중 “보험가액의 합계액이”는 “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제1항의 특정신용장관련보증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으로, “차입금”은 “특정신용장발행계약(같은 법 제2조제16항의 특정 신용장발행계약을 말한다)에 근거한 채무액(해당 중소기업자의 외국관계법인(같은 법 제2조제3항의 외국관계법인을 말한다)의 외국은행 등(은행법 (소화 56년 법률 제59호) 제4조제3항의 외국은행 등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에 한한다) 중 보증을 한 금액(특수보증의 경우에는 한도액)의 총액과 차입금”으로, “총액이”는 “총액이 각각”으로 한다.

② 보통보험의 보험관계로 특정신용장관련보증에 관련된 것에 대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중소기업신용보험법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의 문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문구로 한다.

제3조제2항	1백분의 7 0	1백분의 8 0
제3조제3항	차입금액	특정신용장발행계약(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6항의 특정신용장발행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거한 채무액(중소기업자의 외국관계법인(같은 법 제2조제3항의 외국관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은행 등(은행법 (소화 56년 법률 제59호) 제4조제3항의 외국은행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차입금액에 상당한 금약에 한한다. 이하 같다)
	보증을 한 금액	보증을 한 금액(특수보증의

		경우에는 한도액)
	차입금의 변제(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어음의 지불)	특정신용장발행계약에 근거한 채무변제
제3조제4항	차입금(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어음할인에 의해 융통을 받은 자금)은 중소기업자	경우 전항의 중소기업자의 외국관계법인의 외국은행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해당 중소기업자
제5조	변제(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지불. 이하 같다)	변제
	차입금(어음 할인의 경우에는 어음 채무. 이하 같다), 사채에 관련된 채무(이자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지불채무	특정신용장발행계약에 근거한 채무
	1백분의 70(무담보보험, 특별소액보험, 유동자산담보보험, 공해방지보험, 에너지대책보험, 해외투자관계보험, 신사업개척보험, 사업재생보험 및 특정사채보험에서는 1백분의 80)	1백분의 8 0
제5조제1호 및 제3호와 제8조제1호 및 제3호	차입금 또는 사채에 관련된 채무	특정신용장발행계약에 근거한 채무

제35조 ①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또는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의3제1항의 특별소액보험(이하 “특별소액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로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같은 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제1항의 채무보증으로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영자원활용신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련된 것에 대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같은 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의 문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문구로 한다.

제3조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제1항의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이하 “경

		영자원활용관련보증”이라 한다)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제3항	해당 차입금의 금액 중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차입금의 금액 중
	해당 채무자	경영 자원 활용 관련 보증 및 그 밖의 보증마다, 해당 채무자
제3조의3제2항	해당 보증을 한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보증을 한
	해당 채무자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해당 채무자

②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의8제1항의 신사업개척보험의 보험관계로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련된 것에 대한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중 “2억엔”은 “3억엔(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제2항의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영자원활용신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자원활용신사업자금”이라 한다) 이외의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에 관한 보험관계에 관해서는 2억엔)”으로, “4억엔”은 “6억엔(경영자원활용신사업자금 이외의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에 관한 보험관계에 관해서는 4억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억엔”은 “3억엔(경영자원활용신사업자금 이외의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에 관한 보험관계에 관해서는 2억엔)”으로 한다.

③ 보통보험의 보험관계로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에 관련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중 “1백분의 70” 및 같은 법 제5조 중 “1백분의 70(무담보보험, 특별소액보험, 유동자산담보보험, 공해방지보험, 에너지대책보험, 해외투자관계보험, 신사업개척보험, 사업재생보험 및 특정사채보험에서는 1백분의 80)”은 “1백분의 80”으로 한다.

④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또는 특별소액보험의 보험관계로 경영자원활용관련보증

에 관련된 것에 대한 보험료의 금액은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액에 년 1백분의2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소규모기업자등설비도입자금조성법 의 특례)

제36조 소규모기업자등설비도입자금조성법 (소화 31년 법률 제115호) 제3조제1항의 소규모기업자등설비도입자금대부사업에 관련된 대부금의 대부를 받아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대여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여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같은 조 제5항의 설비자금대부사업(이하 이 조에서 “설비자금대부사업”이라 한다)에 관련된 대부금으로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소규모기업자등이 설치하는 설비 또는 취득하는 프로그램사용권(같은 조 제7항의 프로그램사용권을 말한다)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차주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는 설비자금대부사업에 관련된 대부금의 금액은 하나의 설비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사용권에 대하여 대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의 3분의2에 상당한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의 특례)

제37조 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제5조제1항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제2조제18항제1호 및 제4호의 창업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에 한한다)가 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의 보유
2. 창업자인 중소기업자 중 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 또는 중소기업자 중 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가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

② 전항 제1호에 따른 주식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보유 및 같은 항 제2호의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의 적용에 관해서는 각각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본다.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

제38조 다음 표의 왼쪽란의 자에 대해서는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로 보아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11년 법률 제18호) 제2조제9항의 특정보조금등의 교부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고, 해당 특정보조금등의 성과를 이용한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제36조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경영혁신계획을 작성하여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행정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인정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항의 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것	제36조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 (평성 14년 법률 제147호)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성을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고, 해당 조성에 관련된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경영혁신을 행하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및 제37조

(신사업의 개척 성과를 가지는 중소기업자의 국가 등의 계약에서 수주기회의 증대에 대한 배려)

제39조 관공수(官公需)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 확보에 관한 법률 (소화 41년 법률 제97호) 제2조제2항의 국가 등은 우리나라의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 조의 국가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유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로 신사업의 개척 성과를 가지는 자의 수주의 기회증대를 꽤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절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의 원활화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 계획의 인정)

제39조의2 ① 특정 중소기업자 및 승계사업자(승계사업자로 되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특정 중소기업자가 승계사업자로 되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인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는 단독으로), 그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관한 계획(이하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성 28년 3월 31일까지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의 목표
2. 특정 중소기업자의 업무 및 재무 상황에 관한 사항
3. 승계사업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의한 사업의 강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5.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의 내용 및 실시 시기
6.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7.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수반한 노무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는 특정 인허가등(행정절차법 (평성 5년 법률 제88호) 제2조제3호의 인허가등으로 그것에 근거한 지위를 특정 중소기업자가 가지는 경우에 해당 지위가 승계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의 원활화에 특히 이바지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9조의4까지에서 같다)에 근거한 특정 중소기업자의 지위로 해당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위하여 승계사업자가 승계하려는 것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 기본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2. 해당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관련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일 것
3. 해당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관련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의해 승계사업자가 승계하는 사업에 관련된 특정 중소기업자의 경영자원이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상실되는 것이 아닐 것
4. 해당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하는 것이 아닐 것
5. 해당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 특정 중소기업자의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닐 것

⑤ 주무대신은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제3항의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특정 중소기업자의 지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항의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특정 인허가등을 한 행정청에 협의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행정청은 주무대신 및 제1항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동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행정청은 해당 특정 인허가등을 하는 근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⑧ 전3항에서 정한 것 외에 동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의 변경 등)

제39조의3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해당 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 인정에 관련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설립한 승계사업자로 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사업자는 전항 단서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의 신청 및 전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사업자가 공동으로(해당 신청 또는 신고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단독으로 받은 특정 중소기업자에 관련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관련된 것인 경우로, 해당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승계사업자로 되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해당 특정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인정에 관련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 또는 전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중소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승계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한 후에는 해당 승계사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승계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의 신청이 되고, 그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것인 경우 같은 항의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행정청에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주무대신이 전조 제5항에 의해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서 한 같은 조 제4항의 인정에 관련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의 변경: 해당 행정청(해당 변경이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특정 중소기업자의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삭제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삭제에 관련된 특정 인허가등을 한 행정청은 제외한다)
2. 새롭게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특정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기재하려는 변경: 해당 특정 인허가등을 한 행정청

⑤ 주무대신은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사업자가 해당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

생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위한 조치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주무대신은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 전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사업자에게 해당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전조 제4항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의 동의에 준용한다.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지위승계 등)

제39조의4 ①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제39조의2제3항의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특정 중소기업자의 지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승계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해당 승계사업자는 해당 특정 인허가등의 근거로 되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특정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사업자는 해당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승계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제1항에 의해 승계사업자가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특정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전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정 인허가등에 관련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 법률에 정한 것 외에 특정 인허가등에 근거한 지위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의 특례)

제39조의5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또는 특별소액보험의 보험관계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제1항의 채무의 보증으로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승계사업자(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한다)에 관련된 것에 관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같은 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의 문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문구로 한다.

제3조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의5의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이

		하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이라 한다)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제3항	해당 차입금의 금액 중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차입금의 금액 중
	해당 채무자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해당 채무자
제3조의3제2항	해당 보증을 한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보증을 한
	해당 채무자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해당 채무자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의 특례)

제39조의6 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가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의 보유

2. 중소기업자 중 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승계사업자에 한한다)가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

② 전항 제1호에 따른 주식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보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관련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의 적용에 관해서는, 각각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3절 중소기업재생지원체제의 정비

(중소기업 재생지원 지침)

제40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자원생산성 혁신, 경영자원활용신사업 그 밖의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에 의해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 그 밖의 조치에 의한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그 활력의 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및 다음 조 제2항의 인정지원기관이 강구하여야 할 지원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하 “중소기업재생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재생지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활력의 재생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중소기업 활력의 재생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활력의 재생지원 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활력의 재생지원에 관하여 배려해야 할 사항

③ 경제산업대신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소기업재생지원지침을 변경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중소기업재생지원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관할한 대신에게 협의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중소기업재생지원지침을 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인정지원기관)

제41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중소기업재생지원지침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 도도부현상공회연합회, 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지원법 (소화 38년 법률 제147호) 제7조제1항의 지정법인으로 도도부현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에서 다음 항의 업무(이하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라고 한다)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신청에 의해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를 행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지원기관”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해당 인정에 관련되는 제4항제4호다목의 지역에서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행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응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행하는 것
 가.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자원생산성혁신 또는 경영자원활용신사업
 나.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 그 밖의 조치에 의한 사업의 재생
2. 중소기업자 및 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및 이러한 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전호 가목 또는 나목의 연수를 행하는 것
3. 전 2 호의 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조사 및 연구를 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것
4.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위탁에 근거하여 제47조의 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행하는 것

③ 인정지원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및 전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인증을 받고, 제48조제1항의 인정을 받아 사업재생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같은 동법 제2조제1호의 절차를 말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인정신청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사무소의 소재지
3. 다음 조 제1항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명하려는 위원의 후보자
4.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의 내용
 나.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의 실시 체제
 다.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를 행하는 지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인정지원기관은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변경(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제42조 ① 인정지원기관에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둔다.

②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인정지원기관의 장 및 그 임명하는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위원은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에 관련되는 실무경험 또는 학식경험을 가지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인정지원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인정지원기관이 행하는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 실시체제의 확보, 그 밖의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외에 인정지원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행한다.

⑥ 전 각 항의 것 외에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비밀유지 의무)

제43조 ① 인정지원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위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은 인정지원기관이 제41조제2항제1호의 업무(같은 호 나목의 것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단순히 “업무”라고 한다)를 원활히 행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지원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위원이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제공하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선명령)

제44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인정지원기관의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지원기관에 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정의 취소)

제45조 경제산업대신은 인정지원기관이 전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의 특례)

제46조 인정지원기관으로 특정 중소기업재생지원사업(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에 관련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결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되는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의 채무보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지원기관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８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차입”은 “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의특정 중소기업재생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행하는 재생지원 출자업무)

제47조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중소기업 활력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자원생산성혁신 및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행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72조제2항에서 “특정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라 한다)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해당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업무를 행한다.

제4장 사업재생의 원활화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인정)

제48조 ① 인증분쟁해결사업자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분쟁범위를 사업재생에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재생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절차실시자(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절차실시자를 말한다)로서 선임할 수 있을 것
2. 사업재생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방법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인정신청에 관련된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항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2조의 자금차입에 관련된 확인을 적절하게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정기관에 관한 특례)

제49조 사업자가 특정채무등의 조정(특정채무등의 조정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평성 11년 법률 제158호) 제2조제2항의 특정채무등의 조정을 말한다)에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한 경우(해당 조정신청 시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 신청 전에 해당 신청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특정 인

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특정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민사조정법 (소화 26년 법률 제222호)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법관만으로 조정을 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행하는 사업재생원활화 업무)

제50조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관여하는 사업재생에 대하여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기간(해당 기간 내에 파산절차개시, 재생절차개시, 정리절차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해당 신청시까지의 기간. 다음 조에서 “사업재생준비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재생을 행하려는 사업자의 사업계속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된 채무보증을 행한다.

1. 특정 인증분쟁해결사업자: 특정 인증분쟁해결절차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기간
2. 인정지원기관: 사업재생을 행하려는 중소기업자에 관련된 사업재생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조언(특정 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 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개시한 때부터 해당 계획에 관련된 채권자 전원의 해당 계획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의 특례)

제51조 ①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또는 특별소액보험의 보험관계로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제1항의 채무보증으로 사업재생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 그 밖의 사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사업재생준비기간에서의 자금차입에 한한다)에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련된 것에 대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같은 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란의 문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문구로 한다.

제3조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1조제1항의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이하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이라 한다)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보험가

		액의 합계액과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제3항	해당 차용금의 금액 중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차용금의 금액 중
	해당 채무자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해당 채무자
제3조의3제2항	해당 보증을 한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보증을 한
	해당 채무자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 및 그 밖의 보증 마다 해당 채무자

② 보통보험의 보험관계로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에 관련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중 “1백분의 70” 및 같은 법 제5조 중 “1백분의 70(무담보보험, 특별소액보험, 유동자산담보보험, 공해방지보험, 에너지대책보험, 해외투자관계보험, 신사업개척보험, 사업재생보험 및 특정사채보험에서는 1분의 80)”은 “1백분의 80”으로 한다.

③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또는 특별소액보험의 보험관계로 사업재생원활화관련보증에 관련된 것에 대한 보험료의 금액은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액에 년 1백분의2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고 얻은 금액으로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특정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확인)

제52조 특정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 사업재생을 꾀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특정 인증분쟁해결절차를 행하는 특정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인증분쟁해결절차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해당사업자의 자금차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사업자의 사업계속에 필요한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것
2. 해당 자금차입에 관련된 채권의 변제를 해당 특정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해당사업자에 대하고 해당 자금의 차입 시점에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의 변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

(재생절차의 특례)

제53조 법원(재생사건을 처리하는 한 사람의 법관 또는 법관의 합의체를 말한다)은 전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에 관련된 재생채권과 다른 재생채권(같은 조 제2호의 채권자에게 같은 호의 동의 시 보유되고 있던 재생채권에 한한다)과의 사이에 권리의 변경 내용에 차이를 두는 재생계획안{ 민사재생법 (평성 11년 법률 제225호) 제163조제1항의 재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되거나 가결된 때에는 해당 자금의 차입이 전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재생계획안이 같은 법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차이를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절차의 특례)

제54조 법원(갱생사건을 처리하는 한 사람의 법관 또는 법관의 합의체를 말한다)은 제52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같은 조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금의 차입에 관련된 갱생채권과 이것과 동일한 종류의 다른 갱생채권(같은 조 제2호의 채권자에게 같은 호의 동의 시 보유되고 있던 재생채권에 한한다)과의 사이에 권리의 변경 내용에 차이를 두는 갱생계획안이 제출되거나 가결된 때에는 해당 자금의 차입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갱생계획안이 회사갱생법 (평성 14년 법률 제154호) 제168조제1항에 규정한 차이를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활용

제1절 특허료의 특례 등

(대학 및 산업기술연구법인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의 촉진)

제55조 ① 문부과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사업자에 의한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및 자원생산성혁신과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의 원활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성과에 관련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양도 그 밖의 행위에 의해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학술연구의 특성에 항상 배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기술연구법인{ 산업기술력강화법 (평성 12년 법률 제44호) 제2조제3항의 산업기술연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무대신 등{해당 산업기술연구법인이 독립행정법인통칙법 (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제1항의 독립행

정법 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의 주무대신을 말하고, 해당 산업기술연구법인이 지방독립행정법인법 (평성 15년 법률 제118호) 제2조제1항의 지방독립행정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설립단체를 말한다}는 사업자에 의한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및 자원생산성혁신과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신사업 개척의 원활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법인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성과에 관련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양도 그 밖의 행위에 의해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허료의 특례)

제56조 특허청장관은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10년 법률 제52호) 제4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변경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 및 부칙 제4조에서 “승인사업자”라고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특정 대학기술이전사업(다음 조 및 부칙 제4조에서 “특정대학기술이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각 년분의 특허료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출원심사청구 수수료의 특례)

제57조 특허청장관은 인정사업자가 특정대학기술이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195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

(통상실시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58조 ①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이 승낙된 경우, 해당 승낙에 관련된 통상실시권에 대해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에 등록한 때에는 해당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9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1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이 있던 것으로 본다.

②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이 승낙된 경우, 해당 승낙에 관련된 통상실시권 전부의 이전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해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에 등록한 때에는 해당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99조제3항(실용신안법 제1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이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전2항에 의해 등록을 한 경우 해당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67조의3제1항제2호, 제84조, 제87조제1항, 제123조제4항 및 제125조의2제1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4조 및 제87조제1항과 실용신안법

제37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 통상실시권의 등록)

제59조 ① 특허청에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를 비치한다.

②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일정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조제할 수 있다.

③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에의 등록(이하 “특정통상실시권등록”이라 한다)은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의해 한다.

1. 등록의 목적
2.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승낙한 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의 승낙을 받은 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서 승낙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
5.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서 설정행위로 정하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하는 범위
6. 신청접수의 연월일
7. 등록의 존속기간
8. 등록번호
9. 등록 연월일

④ 전항 제7호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등록의 신청)

제60조 ① 제58조제1항의 등록은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승낙한 자 및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의 승락을 받았던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2항의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관련된 통상실시권 전부의 이전등록은 해당 통상실시권을 이전한 자 및 해당 통상실시권의 이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 등록)

제61조 ①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승락한 자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을 받은 자(이하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라고 한다) 및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 승낙을 받은 자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을 받은

자(이하 “특정통상실시권자”라고 한다)은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등록은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련된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의 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신청접수의 연월일
4. 등록 연월일

③ 전항 제2호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말소 등록)

제62조 ①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 및 특정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을 말소하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
2.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승락이 취소, 해제 그 밖의 원인에 의해 효력을 잃은 것
3.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관련된 통상실시권의 전부가 소멸한 것

② 전항에 따른 등록은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련된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부의 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을 말소한 취지
2. 신청접수의 연월일
3. 등록 연월일

(등록대상 외 등록)

제63조 ① 특정통상실시권자는 특허청장관에 대하여 그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관련된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의 특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해당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의 특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의 해당 특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이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관련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상이 아닌 것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등록은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련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의 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상이 아닌 취지
2.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상이 아닌 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련된 특허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3. 신청접수 연월일
4. 등록 연월일

(등록사항증명서 등의 교부)

제64조 ① 누구라도 특허청장관에 대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제5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열람이나 등사(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디스크로써 조제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자기디스크로써 조제된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 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한 서면(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사항증명서”라고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특허청장관에 대하여 각각에 관련된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에 관련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대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제5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증명한 서면(이하 “등록사항개요증명서”라고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부 청구 시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그 취득, 그 압류 또는 일시적으로 압류나 그 질권의 목적으로 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전조 제1항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로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이나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
2. 전호의 자가 취득한 같은 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이나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
3.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압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압류당한 채권자
4.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 자
5. 전 각 호의 자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특허청장관에 대하여 그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한 서면(이하 “등록사항증명서”라고 한다) 또는 등록사항개요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 또는 특정통상실시권자
2.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 또는 특정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전항의 경우 외에 제2항 각 호의 자는 각각에 관련된 특정통상실시권승낙자의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있어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의 승

낙을 받은 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련된 등록사항증명서의 교부를 특허청장관에게 청구하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특허청장관에게 해당 등록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부청구시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취득, 그 압류 또는 일시적으로 압류되거나 그 질권의 목적으로 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전조 제1항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통지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방법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량 한다.

⑥ 제4항의 통지는 같은 항의 특정 통상실시권 승낙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의 승낙을 받은 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자에게 관련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앞으로 발송하면 충분하다.

⑦ 제4항의 통지는 그 통지가 통상 도달해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허청장관에 대한 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의 적용 제외)

제65조 이 절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장 및 제3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제외)

제66조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평성 11년 법률 제4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제외)

제67조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평성 15년 법률 제58호) 제2조제3항의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제68조 이 절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의한 처분취소의 소는 해당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수수료의 납부)

제69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4조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자
2. 명시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
3. 등록사항개요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
4. 등록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

② 전항의 수수료 납부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인지로 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의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④ 전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은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특허법 의 준용)

제70조 ① 특허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은 이 절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한 명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관한 기간에 준용한다.

② 특허법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20조 및 제25조는 이 절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3호 중 “제1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정령에 위임)

제71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잡칙

(자금의 확보)

제72조 ① 국가는 인정사업자나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사업자(이하 “인정사업자 등”이라 총칭한다) 또는 인정사업자의 관계사업자가 인정계획이나 인정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이하 “인정계획등”이라 총칭한다)에 따라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자원생산성혁신이나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위한 조치를 행하거나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사업자나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사업자가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나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따라 사업혁신설비나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의 도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정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자원생산성혁신 또는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자본의 충실등을 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도도부현은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의 안정 등)

제72조의2 ① 인정사업자등은 인정계획등에 따라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자원생산성혁신 또는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동시에,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실업의 예방, 그 밖에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정사업자등이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실업의 예방, 그 밖에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정사업자등에게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에 대하여 취직의 알선, 그 밖에 그 직업 및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사업자등이 고용하는 노동자 및 인정사업자등에게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그 밖에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사업자등의 관련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그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배려)

제72조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경영자원융합, 자원생산성혁신 또는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의 실시에 의해 그 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자의 경영기반의 강화를 꾀하기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경영 방법 또는 기술에 관한 조언, 연수 또는 정보제공,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의 징수)

제73조 ① 주무대신은 인정사업자등,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사업자 또는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사업자에 대하여 인정계획등, 인정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또는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인정지원기관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의 중소기업재생지원업무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대하여 특정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 또는 제52조의 자금차입에 관련된 확인업무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지사는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자원활용신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경영자원활용신사업계획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기구에 대한 보고징수 등)

제73조의2 ①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이 기구의 영업소, 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가리키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락 및 협력)

제74조 ① 주무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인정사업자등에 관련된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문부과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제55조제1항의 시행에 맞추어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주무대신 등)

제75조 ① 이 법률에서 주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대신으로 한다.

1. 자원생산성혁신설비등에 관한 사항: 자원생산성혁신설비등의 도입에 관련된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2. 자원제약대응제품에 관한 사항: 자원제약대응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3. 사업분야별지침에 관한 사항: 사업분야별지침에 관련된 사업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4. 사업재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재구축계획에 관련된 중핵적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5.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6. 경영자원융합계획에 관한 사항: 경영자원융합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7.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한 사항: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 또는 일반트럭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및 국토교통대신)
8.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사업혁신설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9.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에 관련된 자원제약대응제품 또는 전용부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장관
10.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대신 및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② 이 법률에서 주무성령은 주무대신이 공동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76조 이 법률에 따른 주무대신의 권한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구와 사업활동계획의 인정등과의 관계)

제77조 기구는 특정사업활동지원을 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재구축계획의 인정, 제7조제1항의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의 인정, 제9조제1항의 경영자원융합계획의 인정 또는 제11조제1항의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의 인정의 신청을 재촉하는 것 등에 의해 이들 시책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이것을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78조 ① 기구의 이사,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사원), 감사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요구나 약속을 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에 의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에서 범인이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9조 ① 전조 제1항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그 청약이나 약속을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0조 ① 제78조제1항의 죄는 일본 외에서 같은 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전조 제1항의 죄는 형법(명치 40년 법률 제45호) 제2조의 예에 따른다.

제81조 기구의 이사,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사원), 감사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가 제30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이사,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사원), 감사 또는 직원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① 제39조의4제2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항의 형을 과한다.

제8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이사, 회계참여나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사원 또는 감사는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주식, 모집신주예약권이나 모집사채를 인수한 자의 모집을 하여 주식교환 시 주식, 사채나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한 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0조의21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등기하는 것을 해태한 때
4. 제30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5. 제30조의25제2항 또는 제30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6. 제30조의29제1항을 위반하여 예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7. 제30조의31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나 기록을 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한 때

8. 제30조의32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제85조 제3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그 명칭 중에 산업혁신기구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평성 21년 6월 19일 법률 제54호) 초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다음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 또는 우리나라의 산업활동 혁신 등을 꽤하기 위한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평서 21년 법률 제29호)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구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2조에 따른 개정 후의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9제1항 중 “매사업연도의 개시 전에”는 “그 성립 후 지체 없이”로 한다.